

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0.

발 의 자 : 김도읍 · 이현승 · 이성권
김은혜 · 백종현 · 박충권
추경호 · 김희정 · 구자근
박형수 · 서지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·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,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, 도심형항공기의 안전,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·설비,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“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”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지원센터 운영,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,

전시회 개최 등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3조제1항).

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7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필요한 사항”을 “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으로 한다.

4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
5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
6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, 전시회 등 개최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)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	제23조(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<u>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</u>
<u><신 설></u>	5. <u>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</u>
<u><신 설></u>	6. <u>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, 전시회 등 개최</u>
4.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<u>필요한 사항</u>	7. ----- ----- <u>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